

(별지 제4호 서식)

담당부서		사후관리물품 반출·일시반출(기간연장)신고(수리)서						처리기간
담당과장								즉 시
담당자								
연락처								
신청인	상 호							
	대 표 자							
	주 소							
수입신고번호		수입신고수리일	통관지세관명	적용법조항	사업의종류			
현설치(사용)장소					재반입예정일	종결예정일		
(일시)반출장소								
(일시)반출(연장)기간								
* (일시)반출(기간연장)이유								
HS번호	품명	규격	수량	과세가격	관세감면(분납)액	내국세감면액	비고	
(*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)								
<p>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(사용)장소에서 반출일시반출(기간연장)하고자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고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		<p>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반출·일시반출(기간연장)신고를 수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귀하</p>				
* 구비서류 :						수수료		
1. 신청서 1부.						없 음		
2. 일시반출(기간연장) 사유 입증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함)								

※ 유의사항 : 사후관리물품 반출·일시반출(기간연장) 신고를 한 자는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 비고란에 (일시)반출(기간연장)신고일자, 일시반출(기간연장)기간, 반입일자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